

더샵 송도그란테르 G5-3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02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점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외)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07.(목)	2026.05.19.(화)	2026.05.20.(수)	2026.05.21.(목)	2026.06.02.(화)	2026.06.03.(수) ~ 2026.06.07.(일)	2026.06.13.(토) ~ 2026.06.16.(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샵 송도그란테르 건본주택」에서는 분양 상담전화(☎1600-025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 전화 폭주 및 신청자별 복잡한 상황 등으로 인해 간혹 유선상으로 착오 안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 내용은 청약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및 조건 등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련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세대주 : 본 공고에서의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주체에 참가자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주체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홈페이지(<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제반 사항은 공고일 기준의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부정책 및 제도 변경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07.(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08.21.)]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경우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19.(화)	2026.05.20.(수)	2026.05.21.(목)	2026.06.02.(화)	2026.06.03.(수) ~ 2026.06.07.(일)	2026.06.13.(토) ~ 2026.06.16.(화)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취득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02.)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9834 (2026. 5. 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12 (G5-3BL)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41층 1개동, 아파트 총 85세대

[특별공급 25세대 (기관추천 2세대, 경제자유구역 7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6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65	01	084.2300K	84K	84.2300	33.1354	117.3654	68.9272	186.2926	42.2879	27	2	2	2	6	-	2	14	13	-
	02	118.2300K	118K	118.2300	46.3275	164.5575	96.7502	261.3077	59.3577	54	-	5	5	-	1	-	11	43	-
	03	129.4600K	129K	129.4600	54.2340	183.6940	105.9414	289.6354	64.9958	1	-	-	-	-	-	-	-	1	-
	04	188.7900K	188K	188.7900	77.0811	265.8711	154.4926	420.3637	94.7851	2	-	-	-	-	-	-	-	2	-
	05	198.2300K	198PK	198.2300	79.4731	277.7031	162.2182	439.9213	99.5245	1	-	-	-	-	-	-	-	1	-
합계										85	2	7	7	6	1	2	25	60	-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건분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이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분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084.2300K	118.2300K	129.4600K	188.7900K	198.2300K
약식 표기	84K	118K	129K	188K	198PK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청약홈) 구분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12.28.	2027.05.28.	2027.10.28.	2028.09.25.	2029.02.23.	2029.07.23.	
84K	10~13층	4	689,192,690	513,807,310	-	1,203,000,000	10,000,000	50,15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421,050,000
	16~18층	3	696,067,430	518,932,570	-	1,215,000,000	10,000,000	50,75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425,250,000
	19~24층	5	700,077,690	521,922,310	-	1,222,000,000	10,000,000	51,100,000	122,200,000	122,200,000	122,200,000	122,200,000	122,200,000	122,200,000	427,700,000
	25~29층	5	703,515,060	524,484,940	-	1,228,000,000	10,000,000	51,400,000	122,800,000	122,800,000	122,800,000	122,800,000	122,800,000	122,800,000	429,800,000
	30~32층	3	710,389,800	529,610,200	-	1,240,000,000	10,000,000	52,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124,000,000	434,000,000
	33~34층	2	713,827,170	532,172,830	-	1,246,000,000	10,000,000	52,300,000	124,600,000	124,600,000	124,600,000	124,600,000	124,600,000	124,600,000	436,100,000
	35~37층	3	717,264,540	534,735,460	-	1,252,000,000	10,000,000	52,6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438,200,000
	38~39층	2	724,139,280	539,860,720	-	1,264,000,000	10,000,000	53,2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442,400,000
118K	10~14층	10	946,476,000	706,840,000	70,684,000	1,724,000,000	10,000,000	76,200,000	172,400,000	172,400,000	172,400,000	172,400,000	172,400,000	172,400,000	603,400,000
	15~18층	8	956,358,000	714,220,000	71,422,000	1,742,000,000	10,000,000	77,1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609,700,000
	19~24층	9	961,299,000	717,910,000	71,791,000	1,751,000,000	10,000,000	77,550,000	175,100,000	175,100,000	175,100,000	175,100,000	175,100,000	175,100,000	612,850,000
	25~29층	9	965,691,000	721,190,000	72,119,000	1,759,000,000	10,000,000	77,950,000	175,900,000	175,900,000	175,900,000	175,900,000	175,900,000	175,900,000	615,650,000
	30~32층	6	975,573,000	728,570,000	72,857,000	1,777,000,000	10,000,000	78,850,000	177,700,000	177,700,000	177,700,000	177,700,000	177,700,000	177,700,000	621,950,000
	33~34층	3	979,965,000	731,850,000	73,185,000	1,785,000,000	10,000,000	79,25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178,500,000	624,750,000
	35~37층	5	984,906,000	735,540,000	73,554,000	1,794,000,000	10,000,000	79,7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627,900,000
	38~39층	4	994,788,000	742,920,000	74,292,000	1,812,000,000	10,000,000	80,600,000	181,200,000	181,200,000	181,200,000	181,200,000	181,200,000	181,200,000	634,200,000
129K	14층	1	1,160,586,000	866,740,000	86,674,000	2,114,000,000	10,000,000	95,7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739,900,000
188K	24층	1	1,698,057,000	1,268,130,000	126,813,000	3,093,000,000	10,000,000	144,65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309,300,000	1,082,550,000
	34층	1	1,732,095,000	1,293,550,000	129,355,000	3,155,000,000	10,000,000	147,750,000	315,500,000	315,500,000	315,500,000	315,500,000	315,500,000	315,500,000	1,104,250,000
198PK	41층	1	1,800,171,000	1,344,390,000	134,439,000	3,279,000,000	10,000,000	153,950,000	327,900,000	327,900,000	327,900,000	327,900,000	327,900,000	327,900,000	1,147,65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미포함 금액으로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인허가 및 공부정리 절차, 행정명령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오피스텔(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 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더샵 송도그란테르’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 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로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 사용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업체,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업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공업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여 주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건물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 표기)		84K	118K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	5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50%)	1	3	4
	서울특별시, 경기도 (50%)	1	2	3
신혼부부 특별공급		6	-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	2
합계		14	11	2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국가유공자 등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중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시·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②배점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본 단지는 전용면적 60㎡ 초과 공급 단지로서 단독세대 신청이 불가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대상자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순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7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5.19.(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현장접수)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일반공급	1순위	2026.05.20.(수) 09:00~17:30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5.21.(목)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02.(화) ~ 2026.06.11.(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6.06.0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6.06.03.(수) ~ 2026.06.07.(일)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장소 :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 [표1-1]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건본주택(현장접수)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특별공급 신청당일 건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에 한함 (발급용도 :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발급용도: 당첨자격 확인 및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더샵 송도그란테르']
		○	인감도장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관추천 대상자는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청약자'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건본주택)에서 가능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해당 기관의 추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 •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청약자	•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견본주택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처: '더샵 송도그란테르')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1-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표1-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무자(재직 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표1-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② 축산업 허가증 /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표2]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청약자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 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 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9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6.13.(토) ~ 2026.06.16.(화) [4일간]	10:00~17:00	'더샵 송도그란테르'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219-5695-01	케이비부동산신탁㈜

- 상기 지정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모바일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 제출처 : '더샵 송도그란테르'] ④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⑤ 정부수입인지 : 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세대에 한함)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대리인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으로 간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계약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제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됩니다.
 - ②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제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종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여 당첨 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지정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업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 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당사자 및 시공업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제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사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업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대출금융기관에 따라 블록별, 동별 중도금 대출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실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 본 공동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이 무상 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고, 계약 가능 일자는 공동주택 계약자분께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확장 부위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과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는 외부 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형·위치에 따라 발코니 입면 형태, 창호 크기·위치, 서비스 면적, 채광·환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손잡이 등), 유리 등)이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 또는 다른 제품(타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인접 세대와의 배치 조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부위의 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상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활 습관, 실내 습도에 따라 외부 창호의 창틀과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 또는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외부 창호는 내풍압 등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창호 규격, 유리사양, 창틀 사양, 개폐 방식 및 방향, 분할 규격,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 내에서도 층별·위치별로 사양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의 외부 창호(예를 들어 안방 발코니 외부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배수구)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건본주택과 달리 라인별,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의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에 면한 세대 내부에서는 인접 세대(측면, 상·하층)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발코니에서는 물 사용이 제한되며, 인접 세대(측면, 상·하층)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 공간,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은 준외부공간으로 단열 및 난방이 적용되지 않아 결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보관 물품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외부 창호 및 난간(외부 창호가 난간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높이 및 사양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계약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 84K타입은 실내기 2개소(거실, 안방), 118K, 129K, 188K, 198PK타입은 실내기 3개소(거실, 주방, 안방)가 기본 제공됩니다.
(84타입의 거실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주방 냉방부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방 공간의 냉방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12.28.	입주지정일	
84K	3대	• 주방+침실1+침실2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제조사 : 삼성
118K	3대	• 침실1+침실2+알파룸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29K	3대	• 침실1+침실2+가족실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188K	4대	• 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198PK	4대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2. 고급형

- 고급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기본 제공되는 일반형 시스템에어컨(84타입 실내기 2개소, 118/129/188/198타입 실내기 3개소)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12.28.	입주지정일	
84K	5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제조사 : 삼성
118K	3대	• 거실+주방+안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6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129K	3대	• 거실+주방+안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6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188K	3대	• 거실+주방+안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7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198PK	3대	• 거실+주방+안방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7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기본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내기 선정 시 각 실별로 적절한 단위부하에 따라 에어컨 장비가 선정되며 부득이할 경우 장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 사이즈는 장비사양, 제조사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기본 설치되는 거실, 안방(118타입 이상은 주방 포함)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본 및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실내기 1대당 1개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본 및 유상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 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본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 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2) 평면/가구(마감재) 등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약식표기(타입)	선택사항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2.28.	입주지정일
바닥마감	전실 광폭강마루(w165)	84K	-	-	990,000	99,000	99,000	792,000
		118K	-	-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129K	-	-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188K	-	-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198PK	-	-	2,310,000	231,000	231,000	1,848,000
	전실 원목마루(w150)	84K	-	-	6,930,000	693,000	693,000	5,544,000
		118K	-	-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129K	-	-	8,910,000	891,000	891,000	7,128,000
		188K, 198PK	-	-	14,300,000	1,430,000	1,430,000	11,440,000
거실/복도	프리미엄리빙 (평면옵션에 따라 벽판넬 범위와 히든도어 개수가 다라짐)	84K	옵션1	• 디자인월+간접조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옵션2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	11,950,000	1,195,000	1,195,000	9,560,000
		118K	옵션1-1	• 디자인월+간접조명	10,410,000	1,041,000	1,041,000	8,328,000
			옵션1-2	• 디자인월+간접조명(평면옵션1 선택시)_드레스라운지	10,630,000	1,063,000	1,063,000	8,504,000
			옵션1-3	• 디자인월+간접조명(평면옵션2 선택시)_서브마스터	10,540,000	1,054,000	1,054,000	8,432,000
			옵션1-4	• 디자인월+간접조명(평면옵션1,2 선택시)	10,770,000	1,077,000	1,077,000	8,616,000
			옵션2-1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	15,550,000	1,555,000	1,555,000	12,440,000
			옵션2-2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평면옵션1 선택시)_드레스라운지	15,040,000	1,504,000	1,504,000	12,032,000
			옵션2-3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평면옵션2 선택시)_서브마스터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옵션2-4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평면옵션1,2 선택시)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129K	옵션1	• 디자인월+간접조명	8,450,000	845,000	845,000	6,760,000
			옵션2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	12,110,000	1,211,000	1,211,000	9,688,000
		188K	옵션1	• 디자인월+간접조명	13,850,000	1,385,000	1,385,000	11,080,000
			옵션2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	18,240,000	1,824,000	1,824,000	14,592,000
		198PK	옵션1	• 디자인월+간접조명	18,890,000	1,889,000	1,889,000	15,112,000
			옵션2	• 디자인월+간접조명+히든도어	24,760,000	2,476,000	2,476,000	19,808,000
다용도실	건식 다용도실	84K		• 타일마감+하부장	1,580,000	158,000	158,000	1,264,000
		118K		• 타일마감+하부장+тол장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129K		• 타일마감+하부장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188K		• 타일마감+하부장+тол장	3,310,000	331,000	331,000	2,648,000
		198PK		• 타일마감+상/하부장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현관	중문	84K, 118K, 129K	• 수동+신발장 하부조명		1,780,000	178,000	178,000	1,424,000
			• 자동+신발장 상/하부조명		2,730,000	273,000	273,000	2,184,000
		188K	• 수동+신발장 하부조명		1,870,000	187,000	187,000	1,496,000
			• 자동+신발장 상/하부조명		2,840,000	284,000	284,000	2,272,000
		198PK		• 자동+신발장 상/하부조명		1,550,000	155,000	155,000
주방	프리미엄키친	84K		• 전동플랩장+독립형후드+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수전+우물內간접조명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118K, 129K, 198PK		• 프레스티지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수전+우물內간접조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188K		• 프레스티지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수전+우물內간접조명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욕실1	프리미엄바스	84K		• 마감고급화 (고급수전/도기/뒷선반)	2,580,000	258,000	258,000	2,064,000
	스타일링바스	118K		• 평면변화(건식세면공간)+마감고급화(고급수전/도기/뒷선반)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129K, 188K, 198PK		• 평면변화(건식세면공간)+마감고급화(고급수전/도기/뒷선반)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욕실2	프리미엄바스	84K		• 마감고급화 (고급수전/도기/뒷선반)	2,640,000	264,000	264,000	2,112,000
		118K		• 마감고급화 (고급수전/도기/세면대상판/욕조상판)+조명형 욕실장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129K, 188K, 198PK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옵션3	프리미엄바스	188K, 198PK		• 마감고급화 (고급수전/도기/뒷선반)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드레스룸	프리미엄 드레스룸	84K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제습기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18K			9,640,000	964,000	964,000	7,712,000
		129K, 188K			6,490,000	649,000	649,000	5,192,000
		198PK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제습기 2EA	20,000,000	2,000,000	2,000,000	16,000,000
		드레스라운지	118K		• 복도팬트리+알파룸 內 드레스룸	7,000,000	700,000	700,000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천장 매입조명(제습기제외))				
거실/침실	118K	• 서브 마스터 (침실1,2, 스타일링바스 통합 및 드레스룸)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① 평면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하니,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장 또는 욕실 주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디자인 벽판넬 나누기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 사이즈, 욕실 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약세사리 설치 품목 및 위치,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 레벨 및 바닥타일 규격이 변경됩니다.
-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 선택 시, 건식 세면 공간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18K에서 욕실2 프리미엄바스 선택시, 조명형 욕실장 설치 위해 욕조-세면대 사이 벽체가 추가 시공됩니다.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8K에서 욕실2 프리미엄바스 선택시, 조명형 욕실장 설치 위해 욕조-변기 사이 벽체가 추가 시공됩니다.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드레스룸, 드레스룸라운지 선택 시 가구 조명을 위한 전선 및 안정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드레스룸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수량,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고, 욕실 도어 및 스위치의 방향과 위치는 상이합니다.
- 당 아파트는 전세대 인덕션이 기본 제공되며, 가스쿡탑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추후 주방에서 가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118K 서브마스터 유상옵션 선택시 침실1,2 및 스타일링바스가 통합됩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바닥 배수 없음)은 별도의 도어 없이 침실에서 노출되니,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습식욕실(변기 및 샤워부스)만 도어가 설치됨)

② 가구 및 마감재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드레스룸 유리슬라이딩도어 등)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 스위치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선택 시 신발장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 간접조명 ON/OFF는 천장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현관등과 같이 동작됩니다.)
- 중문(현관중문, 드레스룸 유리슬라이딩도어 등)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자동) 선택 시, 구동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원목마루 옵션 선택 시, 천연자재 특성상 한 세대 내에 설치되는 마루의 나무 색상, 패턴, 질감, 마감처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하자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전제품 및 설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타입)	선택사항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2.28.	입주지정일
인덕션3구	전타입	LG	-	900,000	90,000	90,000	720,000
		삼성	-	470,000	47,000	47,000	376,000
전기오븐	전타입	LG	-	495,000	49,500	49,500	396,000
		삼성	-	418,000	41,800	41,800	334,400

키친핏	전타입	LG	• 톨수납장+키친핏냉장/냉동/김치3도어	8,250,000	825,000	825,000	6,600,000
		삼성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LG	-	1,370,000	137,000	137,000	1,096,000
		삼성	-	1,040,000	104,000	104,000	832,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루미나 2.0	84K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특화조명+안방 및 침실 1,2 감성조명 (색온도, 밝기제어)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18K, 129K, 188K			4,780,000	478,000	478,000	3,824,000
	198PK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84K, 129K, 188K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특화조명 + 안방 및 침실 1,2 감성조명 (색온도, 밝기제어)+실링팬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118K			5,580,000	558,000	558,000	4,464,000
	198PK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전동커튼	84K, 118K		-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에코세이버 스탠다드형	84K, 118K		• 제습환기청정유닛 1개소+환기 콘트롤러 1개소 +이동형 실내공기질측정 장치 1개소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129K, 188K, 198PK		• 제습환기청정유닛 2개소+환기 콘트롤러 1개소 +이동형 실내공기질측정 장치 1개소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에코세이버 프리미엄형(각실) ※전실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84K		• 제습환기청정유닛 1개소+환기 콘트롤러 1개소 +각실(안방,침실) 이동형실내공기질측정장치+전동디퓨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118K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129K,188K		• 제습환기청정유닛 2개소+환기 콘트롤러 1개소 +각실(안방,침실) 이동형실내공기질측정장치+전동디퓨저	10,200,000	1,020,000	1,020,000	8,160,000
	198PK			12,000,000	1,200,000	1,200,000	9,600,000
욕실복합환풍기 (블루투스형)	84K, 118K, 129K		• 욕실복합환풍기 2개소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188K,198PK		• 욕실복합환풍기 3개소	2,180,000	218,000	218,000	1,744,000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제품사에서 개인정보 요구로 계약자가 직접 의뢰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코 세이버는 제습환기-시스템에어컨 자동 연동 운전을 통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는 제습환기청정시스템입니다. 또한, 기본 또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자동 연동 운전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는 에어컨과의 연동은 불가합니다.
- 에코 세이버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침실 시스템에어컨과 자동 연동 운전되며, 주방 시스템에어컨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 에코 세이버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에코 세이버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에코 세이버 스탠다드형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에코 세이버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에코 세이버의 소모성 필터는 사용 시점 기준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교체를 권장해드리며 각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및 세척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모성 필터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교체하여야 합니다.
- 에코 세이버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 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선택옵션에 따라 천장, 방의 구조가 변경될 경우 조명기구,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이동 및 변경될 수 있고, 천정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개소는 이동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코 세이버 프리미엄형은 각 침실에 전동 디퓨저가 설치되며 설정된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힐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에코 세이버는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에코 세이버 프리미엄형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각 침실당 1개가 제공(알파룸 제외)되며, 주방에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또한, 선택옵션(프리미엄 드레스룸, 드레스라운지)에 따라 침실이 드레스룸으로 변경되거나 거실/침실이 하나의 실로 통합될 경우 기존 침실의 실내공기질측정 장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가전(키친핏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유상옵션 선택 시, 비노출면(측면, 후면, 하부 등)에는 가구, 마루,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키친핏 유상옵션(삼성/LG)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엘지전자 FIT&MAX 선택 시 컬러 선택은 불가합니다.
- 키친핏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및 가전, 가구의 열림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공기정화살균시스템(드레스룸 제습기)은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유상옵션 추가 금액은 기본형 욕실팬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며 기본 제공되는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및 공기정화살균시스템(드레스룸 제습기)은 각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공기정화살균시스템(드레스룸 제습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정화살균시스템(드레스룸 제습기)의 광촉매필터는 5년 주기로 교체 필요하며 사용 방법에 따라 교체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까지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의 주가용 자동소화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가스사용이 필요할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입주자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을 활용한 직간접 특화조명(하부 직하 조명[색온도, 밝기 제어] + 상부 간접조명[점소등 제어])이 설치되고,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룸 및 일부 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 계약안내문 참조)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의 거실 직간접 특화조명 하부 직하 감성조명[색온도, 밝기 제어]은 월패드, 침실 감성조명[색온도, 밝기 제어]은 침실 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의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특화조명 몸체 연결 부위 발생하는 이음새의 수량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 등박스 내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동커튼

- 전동커튼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 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0Kg 미만의 커튼지 하중을 허용)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식 다용도실 유상옵션 선택 시, 세탁기 설치 공간을 제외한 건식공간의 바닥은 거실/주방과 동일한 레벨로 변경되며, 바닥에 난방 코일이 시공됩니다. (세탁기, 가구 설치 구간 난방 코일 제외되며, 배수는 세탁기 설치 공간 내에서만 가능함) 건식 다용도실 미선택 시, 습식 다용도실이 시공되며(입식 손세탁볼 제공),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구배로 인하여 바닥 레벨이 고르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구성이 상이하니, 옵션 관련 세부 사항은 분양자료, 유상옵션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 여부, 옵션 조합에 따라 프리미엄리빙(벽판넬, 간접조명)의 적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벽 마감재 종류(타일, 벽판넬) 또는 부위별(창호 주변) 마감재의 나누기가 상이하며, 나누기 라인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단차가 발생하며, 이는 하자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미엄리빙 선택 시, 제공되는 월판넬은 본 공사 시 판넬 나누기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리빙 유상옵션에서 히든도어 옵션 추가 시 설치되는 히든도어는 기본형 목도어와 오픈 폭 및 도어 두께, 프레임 및 도어 사양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도어별로 손끼임 방지용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리빙 옵션 선택 시 거실/복도면의 미려함을 위해 기본형과 도어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욕실 도어 하부에 재료분리대 폭 및 형태가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가구 배치, 마감, 수납구성 및 하드웨어, 악세서리 적용이 상이합니다.
- 주택형별 프리미엄 드레스룸 유상옵션 구성이 상이하니, 옵션 관련 세부 사항은 분양자료, 유상옵션 카탈로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링팬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2.0 유상옵션 선택 시 추가 선택이 가능하며, 본 공사 시 제조사의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 방법 및 설치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안내,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130-0064-1710	케이비부동산신탁㈜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추가 선택품목 대금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증 등)을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 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 ④ 입주자 방문, 조치요청 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 예정일 : 2030년 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거주 여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1곳)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준공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차대수(계획) : 공동주택 136대, 오피스텔 24대, 근린생활시설 5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단지 주출입구를 통한 진입 (지하 1층)	[지하 1층 : 2.7~3.0M] [지하 2층 : 2.3M]	3.0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등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6-104-0000700 호	90,899,2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토지를 수탁받은 매도인 겸 수탁자(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업체 (주)포스코이앤씨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6개 블록(송도국제도시 G5-1, G5-11, G5-3, G5-4, G5-5, G5-6)별로 개별 공고되나 실질적으로 단일 계약에 의거한 통합 사업임을 확인하며, 각 블록의 분양수입금이 전체 공사비 및 사업비로 통합 관리·전용됨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본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본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④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주)포스코이앤씨)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으며, 시공업체 교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업체(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주)포스코이앤씨)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습니다.
- ⑥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⑦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 나.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시아플랜 건축사무소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	(주)이룸이앤씨	(주)이룸이앤씨
금액	1,090,100,000	264,000,000	120,313,600	102,671,25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단지로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감리 용역 계약이 통합 체결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사	시공업체	시행위탁사
회사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포스코이앤씨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74611-0002979	110114-0037603

12 단지 여건 등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업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 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는 커뮤니티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아크'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설치 집기 및 서비스 내용은 입주 전 확정됩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료는 개시 시점 1년간 무상 운영 이후 유료 전환되어 관리비에 청구되며,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는 향후 운전자 사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협의에 의해 운영 방법 및 운영 여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 건축물의 특성상 타 분양시설 용도에 따른 동선, 소음, 냄새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인접된 시설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 공지는 공공(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계약 등을 설정하고 유지관리하는 공공에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간 대지 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공급됩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F9~F12블록, G6블록 등 주변 필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될 수 있으며, 주변개발 시 현재 조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송도국제업무단지 G5 블록은 6개 블록이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승인(G5-1, G5-11) 또는 건축허가(G5-3, G5-4, G5-5, G5-6)를 득하여 공급되는 독립된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각 블록별, 상품별(주거, 오피스텔 등)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조경 및 공용부분은 해당 블록, 상품의 시설로서 블록 또는 상품 간 시설 교차 이용 및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타 블록 또는 상품의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는 각 블록별 시설 규모 및 사양의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현장 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공급시, 입주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4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23.02.28)' 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 부위 등의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각종 인·허가 도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설치된 환기구(DA), 계단실, 외부엘리베이터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색상(외벽 및 유리)과 인근 공원의 식재, 패턴, 레벨 등의 표현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예정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광고물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를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현황(협오시설 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 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 건본주택에는 G5-1블록 공급 타입에 해당하는 [102C, 128C] 타입과 G5-3, 4, 5, 6블록 공동주택 공급 타입에 해당하는 [118K] 타입의 주택형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평면 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치수 및 마감재 색상, 설치 제품의 크기,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 [102C, 128C, 118K] 타입 외 건본주택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공사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 선택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최종 건축(변경)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피난용 승강기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전실 내에 위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포장(자재 및 문양),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 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등의 사양, 수량,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경관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 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를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 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카이 커뮤니티는 연출된 공간으로 창호, 내부 공간 및 마감 등은 실시공 시 인·허가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실외기실에 설치된 실외기 루버는 본 시공 시 자동 개폐 방식으로 시공되며,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전원 또는 무전원 시스템으로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의 사양, 유리 두께, 색상, 규격, 업체 등은 풍압과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표시된 피난용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노출), 개폐 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오픈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풍압 등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유리 두께 및 난간대의 규격, 색상,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표현된 공원의 시설물, 선형, 식재, 수목(수량 포함)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지환경 (학교, 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브릿지 등)은 시공업체의 시공 범위가 아니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브릿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 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 구간이 주변 도로 및 공원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 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 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 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반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해 단지 내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공원과의 접근 효율성을 위해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외부인의 출입 등으로 세대의 프라이버시 간섭, 소음 등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공원(G5-2블록) 남측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악취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공원시설물(놀이터, 화장실 등)로 인해 소음, 악취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G5-2블록(공원)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원의 지형 및 동선,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의 종류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5-2블록(공원) 내 관리사무소/카페테리아, 화장실1, 화장실2/매점이 설치되며,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브릿지는 계획 단계 이전으로, G5-1블록, G5-11블록, G5-2블록, G6-1,2블록의 진출입 계획(위치, 계획고 등), 연결브릿지 선형 및 형태는 관계기관의 의견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6-1,2블록(공원)은 조성계획 이전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원 내 건축물, 연결브릿지, 공원의 지형 및 동선,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지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5-2블록(공원) 및 G6-1,2블록(공원)은 사업시행자와 인-허가청 간의 협의에 따라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계획] • 초등학생은 '예송초'로 임시 배정 가능하며,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의 학생 배정 방법은 연수구 송도동(4학교군) 내 배치 가능하며,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일반고 학생은 인천시 연수구(4학교군) 내 배정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근 학교설립 여부 및 추진은 관할 교육청 정책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변경)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허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 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 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세대 창고,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 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트니스(지상1층)와 지상 상층부에 스카이 커뮤니티가 계획되어, 인접한 상하부 세대는 소음, 진동, 시선 간섭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 계약 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종에 따라 저층 세대는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 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탐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지하1층에 계획되고, 지상에는 쓰레기 이송설비가 계획되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유하며, 위치 및 개소는 건축허가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 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 간섭 등의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 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수경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수경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 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도 상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 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내진 I 등급] 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금속,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1층으로, 세부적인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도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 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주상복합의 동 표기는 설계도서를 준용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일하게 [301동]으로 표기됩니다. • 세대 내 외부 창호와 외벽 마감 시스템(커튼월 및 커튼월록)의 유리사양에 따라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리 반사율에 따라 인접 세대의 눈부심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외부 구조물로 인해, 시선 간섭, 온도 차이에 따른 수축팽창의 소음, 낙하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외부 수직 구조물은 풍압 등 구조 검토를 통해 사양, 규격,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구조물에 따른 풍절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층 코어 내에는 고정된 채광창이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 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임의로 철거/확장은 불가능합니다. • 최상층 옥상에는 외부 마감 시공을 위해 지지 구조재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풍압 등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 사양, 규격, 형태,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 일부 구간에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에 계획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 남측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와 공유합니다.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기본 2.7m(최대 3.0m)이며,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진출입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차량 재원을 초과하여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 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 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동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서비스(전력, 통신, 소방 등의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철훈,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 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피트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 방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우, 강설 시 차량 등을 통해 유입되어 바닥에 떨어진 물기로 인한 낙수 피해는 하자보증 및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 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 펌프류 외 기계설비 등에 의한 기준값 이내의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는 화재 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인근에 통합 배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동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이며,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각종 안테나 및 관련 장비)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배전반, 발전기, 방재실의 각종 서버 장비, 홈네트워크 서버 장비, MDF실의 통신 기간사업자의 장비, 각종 안테나, 공용부 조명기구 등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유하며, 이로 인한 재산권 분할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용시설(관리사무소, 방재실, 재활용분리수거, 쓰레기 투입구 등)은 공동으로 관리/운영되며, 공간의 분할, 구획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배전반, 발전기, 조명기구,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보안등, 전기차 충전설비, 콘센트, 무인택배, 주차관제, 조명제어 시스템, CCTV, 출입통제, 방송설비, 비상벨, 소방설비, 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은 공동으로 관리/운영되며, 이들의 서버 장비 및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재산권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체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의 관리비(전기세)는 시공업체에서 납부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단지에서 A/S센터 사용 공간을 해당 시설로 이용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타 공간으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타 공간이 없거나 A/S센터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한 공간일 경우 단지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에 설치된 전기/설비기기 관련 각종 계량장치(전력량계, 급탕/급수계량기, 공조설비의 유량계, 열량계 등)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추후 시설 운영 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각 실별 또는 각 구단별 각종 계량장치는 운영 주체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피트니스 시설이 설치되어 시설 상부세대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비상시 일반인의 주민 대피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하여 커뮤니티시설 중 일부를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하며, 무상 이용 기간 이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설치된 장비 및 집기는 회수됩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 [84K] 타입은 건립 세대인 [84OG]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129K, 188K, 198PK] 타입은 건립 세대인 [128C]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5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복층형 세대 2층 천장고는 2,300mm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 댕수 및 승강기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공용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을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 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피난 동선에 방해가 되는 다른 물품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 시 해당 세대와 하부 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 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 되게 설치되고(노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개폐 방향과 최하층 세대의 외부 피난을 위한 창호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 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 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 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 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 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 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 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 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 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고 유상옵션(삼성/LG)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각 단위 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 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창의 락장치를 해제하여 전면 개방하는 경우 등 관리 미흡의 경우 강풍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창호 탈락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 공간의 도어 개폐 방향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 공간 및 실외기실과 인접한 침실에서 결로, 소음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난간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면 돌출 및 층수 변화에 따라 상부 세대와 인접 세대의 단열재 시공이 상이하여 내부 마감재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내 피트 및 배관 공간은 변경(전용)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복층 세대 하부 세대는 상부 세대 외부 테라스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상/하부층 세대는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세대(129K, 188K)의 거실, 침실 등의 창대 높이(650mm)로 인해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형 세대(129K, 188K)의 2층 이삿짐 운반은 내부 계단으로 가능하며, 이삿짐 크기에 따라 운반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에 계획된 펜트하우스의 외부 테라스에는 주동 입면 유리 마감재 시공을 위한 구조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시선, 채광, 환기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98PK 타입의 안방 내 욕실의 세면 공간은 건식 세면 공간으로,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창호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 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 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거실 외부 창호에는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및 안방 외부 창호에는 분할형 이중 창호가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9K, 188K, 198PK 타입의 외부 창호는 커튼월시스템의 여단이 창호(테라스 제외)이며, 풍압 테스트에 따라 유리 두께 및 프레임의 재질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외부 온도 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여단이 창호의 개폐방향과 개폐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강풍시 락장치를 해제하여 개방하는 경우 창호 탈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외부 창호는 커튼월의 여단이 창호(테라스 제외)이며, 풍압 테스트에 따라 유리 두께 및 프레임의 재질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외부 온도 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 창호는 삼중 유리 단창으로 시공되고, 내/외부 온도 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루버는 전원 또는 무전원 타입의 자동 개폐 방식으로 시공되나,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 공간 및 다용도실의 창호는 여단이창(단창)으로 시공되며, 공급사 및 브랜드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바람이 잦고 강도가 크므로, 여단이창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확실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외부 경관 및 단열, 결로, 풍압 등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가 결정되었으며, 창호의 창대 높이로 인해 시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기계전기설비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일반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탐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를 통한 운반이 제한적으로 이삿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단위세대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수변전설비, 전력 계통 등은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전설의 구조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최하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법 및 방재 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 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1동] 공용홀 천장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301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 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 열원을 이용한 지역난방방식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상에는 소화용 수조가 설치되어 인접 호실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옥상 포함)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및 옥상층에는 태양광 집광 설비(PV, BIPV)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 시 위치, 규모, 색상,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용시설(관리사무소, 방재실, 재활용분리수거, 쓰레기 투입구 등)은 공동으로 관리/운영되며, 공간의 분할, 구획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배전반, 발전기, 조명기구,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보안등, 전기차 충전설비, 콘센트, 무인택배, 주차관제, 조명제어 시스템, CCTV, 출입통제, 방송설비, 비상벨, 소방설비, 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은 공동으로 관리/운영되며, 이들의 서버 장비 및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재산권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에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 설비(BIPV)의 색상은 실제 공사 시 인접한 유리라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복합된 시설로 향후 복도 등 공용부분에 타용도의 배관 등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각종 안테나 및 관련 장비 등은 건축 평면 계획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장비나 시스템이 공유될 수 있으니, 이를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등이 인접한 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기준값 이내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제공[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8m*2.8m 1개소]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및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기계전기설비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그릴 또는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코 세이버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설치되는 필터의 경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 교체 주기(연1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 방향은 건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람에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옵션에 따른 추가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안방에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일반형)이 기본 설치됩니다. (84타입의 거실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주방 냉방부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방 공간의 냉방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4타입 : 실내기 2개소(거실, 안방) - 118타입, 129타입, 188타입, 198타입 : 실내기 3개소(거실, 주방, 안방)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상부 세대용(위층세대)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단위 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냉장고장 하부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소방 법규에 따라 쿨탐용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기기류가 랜지후드 덕트 내부에 설치되며 소화기 유지 관리를 위해 덕트의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랜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모터의 성능관련 흡입력과 모터 소음은 비례하므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홍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침실 내부(시아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배선기구의 수량 및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설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 열원을 이용한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대피공간(10층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규격 및 재질 등은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 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 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 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 공급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지역난방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 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오피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 조명, 배선기구, 감지기 등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 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침실 혹은 거실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
-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방 무선충전 멀티콘센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일반 가구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이 불가능합니다.
- 실외기 루버는 전원 또는 무전원 타입의 자동 개폐 방식으로 시공되나,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설비 제품(환기장치, 욕실팬,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해안가에 인접하여 해무 발생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세대 외부에 결로수 발생이나 전기기구의 수명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세대 내에 관련법규에 의해 소방 유도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도어락은 디자인 개발단계로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네트워크 허브 장치가 설치되며, 포트 수 및 구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회선의 가입 및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현관 자동 문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동작 중인 앱을 임의로 중지시킬 경우 사용자가 앱을 다시 시작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함)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주차 위치 안내서비스는 제공되는 시스템 방식에 따라 구성 및 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되며, 외부 플랫폼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외부 플랫폼 연동 - 카카오톡,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연동 시 제공되는 기능은 각 플랫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동을 위한 환경 및 기능의 종류는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플랫폼과의 연동은 입주일로부터 3년(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 1년)간 무상이나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금 주체는 각 플랫폼 운영사임) -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각 플랫폼 연동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단지 홈페이지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운영업체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 장애인용 월패드 점자 커버 및 점자 스마트 스위치는 입주 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지참) - 장애인용 스마트홈 상품의 디자인, GUI 등은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침표(국민DR) 서비스 - 단지 입주민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침표(국민DR) 서비스는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제도로, 전력거래소/수요관리사업자/정보제공사업자의 시스템 연계로 제공 및 운영되며, 각 운영사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예약관리시스템은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현장 여건 및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기능 또는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파트 총 85세대 (G5-3블록)	분양문의 1600-0255
84㎡K / 118㎡K / 129㎡K / 188㎡K / 198㎡PK	■ 분양홈페이지 : https://더샵송도그란테르.kr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